

본 자료는 법무부에서 외주 사업을 통해 번역한 문서로, 법무부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며 인용이 불가합니다. 정확하고 상세한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처원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판결이 적법한 것일까요?

인권운동가 탄압에 대한 중국 법원의 역할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는 전 세계 1,000 만 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국제적 운동으로, 우리 안의 잠재된 인류애를 결집하여 모든 사람이 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 우리의 비전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약속을 지키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책임을 이행하는 세상"이다. 국제앰네스티(AI)는 어떠한 정부, 정치 이념, 경제적 이익 또는 종교로부터도 독립되어 있으며, 주로 회원 회비와 개인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우리는 전세계인과의 연대와 공감에 기반한 행동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표지 사진: ©Getty Images and 국제앰네스티(AI)

© 국제앰네스티(AI) 2025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문서의 내용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저작자 표시, 상업적 사용 금지, 변경 금지, 국제 4.0) 라이선스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다.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legalcode>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의 허가 페이지를 참조할 것: www.amnesty.org
국제앰네스티(AI)가 아닌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자료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2025 년 초판 발행

국제앰네스티(AI)
Peter Benenson House, 1 Easton Street
London WC1X 0DW, UK

색인: ASA 17/0307/2025

원문 언어: 영어

amnesty.org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목차

1. 개요	5
2. 배경	8
3. 연구 방법론	9
4. 관련 법체계	11
4.1 국제인권법	11
4.2 중국 국내 형법	13
4.3 형법	13
4.4 형사소송법	14
4.5 사법 해석	16
5. 형법 조항의 불명확성 및 남용	17
5.1 모호하고 애매하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17
5.2 정당한 목적 없는 국가안보 범죄 혐의의 광범위한 사용	18
6. 기본적 자유의 조직적 범죄화	22
6.1 의견 및 표현의 자유	22
6.2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23
6.3 국제 교류 관련 혐의 적용	25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반복적 침해	27
7.1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27
7.2 변호인 선임권	29
7.3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및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배제	30
7.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31
7.5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	31
7.6 공정한 처벌	33
7.7 불법 구금에 대한 배상권	34
8. 결론 및 권고사항	35

1. 개요

"우리는 형법상 국가안보 조항이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지속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거듭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유엔특별절차임무수행단(United Nations Special Procedures, UNSP) 6 곳이 작성한 인권침해 혐의 제기 공동 서한, 2022 년 2 월 3 일¹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사법기관과 법 집행기관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운영된다."

제 4 차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서면 답변, 2024 년 5 월 31 일²

"그들은 법을 준수한다고 집요하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법을 짓밟고 있음이 분명하다."

국제앰네스티(AI)의 중국 인권 변호사 왕취안장과의 인터뷰, 2025 년 6 월

위의 인용문들은 중국 정부가 법치 준수를 거듭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운동가에 대한 유죄 판결을 기록한 법원 판결들 분석 결과 중국 법원은 상당수 사건에서 이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AI)가 수집·검토한 총 102 건의 사법 문서를 바탕으로, 64 명의 인권운동가(HRD)가 연루된 68 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국제앰네스티(AI)는 기소장, 판결문 및 기타 사건 판결들을 분석하여 혐의, 기소, 형량의 패턴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과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중국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행동, 행위, 표현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려 개인을 투옥하는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요소를 파악했다.

¹ UN Special Procedures Communication [AL CHN \(2.2022\)](#)

² "UN Human Rights Counci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China Addendum: Views on conclusions and/or recommendations, voluntary commitments and replies presented by the State under review", 31 May 2024, UN Doc. A/HRC/56/6/Add.1, para. 34.

법원이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보 범죄 혐의로 인권운동가를 기소하는 데 채택한 증거에는 다음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 중국과 미국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댓글을 게시하고 타인의 댓글을 공유한 행위
- 저녁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모임을 가지며 사회 문제를 논의한 행위
- 개인적 경험이나 직업적 경험에 관해 언론인과 인터뷰한 행위
- 비영리 단체에서 활동하며 중국 본토 외 지역에서 자금을 조달하려 한 행위
- 비폭력 활동에 관한 교육에 참여한 행위

판결이 선고된 모든 검토 대상 사건(68 건 중 67 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즉, 이 표본의 유죄 판결률은 100%이다. 이 사건들 대부분(90% 이상)에는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확보라는 명분으로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다. 관련 문서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명확하고 일관된 정의가 결여되어 있으며, 합법성·필요성·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데 적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 「형법」 조항들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러한 자의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으로 보이며, 사건의 정치화나 더 많은 범죄 혐의를 구성하기 위한 편향된 증거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독립적인 감독의 대상도 아니다.
- 68 건 중 단 3 건에만 폭력 혐의가 포함되어 있고, 그 3 건의 경우에도 인용된 증거를 근거로 폭력과의 합리적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 법원 문서들은 판사들이 중국 국가와 중국공산당(Chinese Communist Party, CCP)을 일반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국가 전복죄의 한 요소로 간주하거나, 정부 법률과 정책에 대한 비판을 “중국공산당(CCP)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공격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이러한 동일시 현상은 중국 법률 체계의 구조적 특징인 법원의 독립성 결여에서 비롯된 직접적인 결과이자 증거이다.

또한 법원 문서들은 국가안보 범죄 혐의 적용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의 위험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다양한 방식을 드러내는 동시에,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을 포함한 이러한 침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도 보여준다.

- 국가안보 범죄 혐의가 공식적으로 적용되면, 중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법적 보호 장치가 거의 전면적으로 유예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정거소감시(residential surveillance in a designated location, RSDL)’ 제도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국제앰네스티(AI)는 사상 처음으로 이 제도가 국제법상 범죄이자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 norm)으로서 금지되는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국제앰네스티(AI)는 단 한 건에서만 변호인 선임권이 완전히 거부된 사례를 발견했지만, 법원 문서와 인터뷰에는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겪은 개인 경험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선택한 변호사와 가족에 대한 위협, 피고인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국선 변호사의 사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에게 접근할 권리에 광범위한 제약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정보는 특정 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국제앰네스티(AI)를 비롯한 여러 단체가 공개적으로 언급해 온 주제이다.
- 조사한 사건 중 11 건에 대해서는 고문을 통해 얻은 불법 증거가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법원은 11 건 중 어느 사건에서도 인용된 증거를 배제하지 않았다.
-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3 명을 제외하고 모두 최소 징역 18 개월부터 최대 2 년간 집행이 유예되는 사형*³에 이르는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절반 이상의 사건에서 이른바 ‘정치 권리 박탈’이라는 ‘부가형’이 선고되었는데 이는 출소 후 기본적 자유권의 행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관행으로서 명확한 정의나 항소 수단이 없고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역자주: 중국 「형법」 제 48 조는 사형을 선고해야 할 범죄자에 대해 당장 집행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형과 함께 2 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 50 조에 따르면 유예 기간 중 고의적 범죄가 없으면 무기징역으로, 공로가 인정되면 25 년 유기징역으로 감형된다. 한국 형사법상 형의 집행 자체를 면제하는 ‘집행유예’와는 다른 제도이다.

국제앰네스티(AI)는 공식 문서와 인권운동가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통해, 중국 사법부가 정부의 체계적인 인권 침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 사법부는 특히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인권 활동을 억압하고 실질적인 투옥 위협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목적에 조력하고 있다. 표현, 결사,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권리 실현의 기반이 되는 권리(enabling rights)'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침해는 전반적인 인권 보호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중국 내 만연한 불처벌 관행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저해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 재발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의 명확하고 분명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법치를 수호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공약이 과연 진정성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제앰네스티(AI)는 중국 당국이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하고, 인권운동가들이 인권 침해의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고 인권 증진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정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국제 인권 조약 의무를 준수하고,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와 강제 실종에 대한 절대적 금지를 포함한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을 존중할 것
- 단순히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금되거나 투옥된 모든 사람에 대한 형사 기소를 취하하고 즉시 석방하며, 구금 중 발생한 공정한 재판권 침해 및 기타 위법 행위 의혹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보장할 것
-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범죄 혐의 적용, '지정거소감시'로 알려진 구금 관행, '정치적 권리 박탈'이라는 부가형을 포함하여 국제법에 위배되는 조항들을 폐지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할 것

2. 배경

지난 20 년 동안 중국 내 인권운동가들은 중국 사회만큼이나 다양하고 다채로운 집단임을 입증해 왔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며 자신이나 가족을 위한 정의실현을 청원하거나 지방정부에 정의실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들은 비공식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도시와 농촌 간 불평등, 고용에서의 노골적인 성차별, 플랫폼 경제에 내재된 경제적·사회적 불안정의 위험 등 뿌리 깊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정보와 접근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그들은 법정에서 있을 수도 있고, 언론에게 취재를 받는 쪽일 수도, 언론인으로서 질문을 던지는 쪽일 수도 있으며, 교수나 학생일 수도 있고, 대학에 다녀본 적이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들은 다양한 종교적 신념을 지니고, 서로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유형의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지난 10 년, 특히 시진핑(Xi Jinping) 국가주석 겸 중국공산당(CCP) 총서기가 집권하여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중국 내 인권운동가들이 겪은 공통적인 경험은 바로 당국의 감시와 탄압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정의를 추구한 데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의 인권운동가는 무엇이 국가안보 위협에 해당하는지를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백지위임장과 같은 전권을 누리는公安 및 사법 기구에 의해 중대하고 조직적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아왔다.

이러한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유엔 인권 기구들은 중국에서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사례가 그 범위가 너무 넓고 지리적으로도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우려를 자주 기록해 왔으며 2020년에는 전례 없이 50 명 이상이 서명한 공개 성명을 발표하여 '중국 인권 실태를 감시하기 위해... 중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촉구했다.¹ 그로부터 5 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탄압 기제에 대한, 특히 그 메커니즘의 전국적 적용 방식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제자리걸음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 조치도 훨씬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 브리핑은 국제앰네스티(AI)와 그 밖의 비정부기구, 참여 학자, 개인, 싱크탱크 및 활동가 네트워크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중국 형법 조항의 모호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표현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는 한편, 개별 사건 기록을 통해 해당 법률이 얼마나 불명확하고 자의적이며 부조리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다. 나아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범죄화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절차적 보장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는 구조적 패턴을 보여준다.

¹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UN experts call for decisive measures to protect fundamental freedoms in China", 26 June 2020,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20/06/un-experts-call-decisive-measures-protect-fundamental-freedoms-china>.

3. 연구 방법론

본 연구에서 국제앰네스티(AI)는 유엔 인권 기구가 주목했던 중국 본토 내 인권운동가(HRD)의 개별 경험과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의 '특별절차 통보 데이터베이스(Special Procedures Communications Database)'를 사용하여, 2014 년부터 2024 년까지 유엔특별절차임무수행단(UNSP)이 중국 정부에 보낸 공식 통신문을 분석했고, 이를 통해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인권 침해 의심 사례들을 식별했다.

- 1) 해당인이 단독으로든 또는 다른 수임자들과 공동으로든, 인권운동가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이 발송한 정기 통신문(혐의 서한이나 긴급 호소)의 대상이었던 경우
- 2) 해당인이 유엔자의적구금실무단(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이 발표한 의견서의 심의 대상이었고, 실무단이 그 사람의 구금이 인권 옹호 및 증진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일부 사례에서 이러한 판단은 매우 확고하여, 해당 구금이 '법 앞의 평등'을 보장하지 않은 자의적 구금이었음(또는 현재도 자의적임)을 확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는 세계인권선언 제 7 조 위반에 해당한다.

159 건의 사례가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다. 국제앰네스티(AI)는 이 중 기소 및 판결 단계까지 진행된 68 건과 관련된 102 개의 재판 서류를 수집, 분석, 평가했으며, 이는 최종적으로 중국 본토 내 인권운동가 64 명과 관련된 사건들이었다. 각 사건에서 확인된 일관된 핵심 정보를 수집하고 코드화하여 전체 사례 데이터의 상세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운동가 기소에 대한 경찰, 검찰 및 사법 당국의 접근 방식을 더욱 포괄적으로 조명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문서에는 검찰원의 기소장, 1 심 법원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이 포함되었다. 국제앰네스티(AI)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네트워크와 공개 자료 검색을 통해 문서를 수집했으며, 공개 자료로 접근한 문서는 언론 보도, 다른 비정부기구(NGO) 보고서, 유엔 문서와 상호 대조하여 검증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례별 위험 평가를 거쳐 중국 내 변호사 및 활동가와 직접 접촉하여 확인했다. 유엔 인권 기구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가 공개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공식 경로를 통해 유엔에 문서를 공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²

조사 결과의 검증 및 확인을 위해 국제앰네스티(AI)는 유엔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관련 통보서 및 의견서의 내용과 이러한 통보서에 대한 중국 정부의 53 개 답변을 검토했다. 국제앰네스티(AI)는 2025 년 8 월 중국 정부에 직접 서한을 보내 보고서의 조사 결과와 결론을 제시하고 추가 정보와 의견을 요청했다. 본 보고서 발행일까지 중국 정부는 답변하지 않았다.

² Between 2018 and 2023,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adopted language requesting a range of information about detained activists, including some on the List of Individuals Named. See most recently the 401st report of the Committee of Freedom of Association, Case 3184, UN Doc. ILO GB.347/INS/17.1, para 2709-297.
https://www.ilo.org/sites/default/files/wcmsp5/groups/public/@ed_norm/@relconf/documents/meetingdocument/wcms_872245.pdf

추가 정보 요청 중 두 건은 특히 중국의 형사 기소 및 사법부 운영 관련 데이터에 초점을 맞췄다. 중국 내 형사 소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정보원에 일관되고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데다, 정부의 답변이 없는 상황이었기에, 국제앰네스티(AI)는 국가안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주요 관심 법률에 따라 중국 법원에 제기된 모든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 실제로 '민감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적 절차는 중국 법체계 및 사법체계의 일반적 또는 '표준적' 절차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앰네스티의 분석은 중국 법원이 심리한 모든 사건이 법 집행 기관, 검찰원³ 또는 법원에 대한 효과적 감독의 부재 등 권리 보호 측면에서 유사한 구조적·체계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분석의 근거로 사용된 인권운동가 사건 목록은 유엔의 중국 내 인권 문제 해결 노력이나, '개별적으로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평화적 방식으로 인권을 증진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는' 광범위한 개인 집단이라고 유엔이 정의한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상기 언급한 목록의 공식 출처에 대한 접근이 제약되기 때문에, 앰네스티는 UN 특별절차임무수행단의 활동을 대리 지표로 사용하여 선정한 이 목록이, 중국 정부가 법적 장치를 통해 기본권 행사와 인권 옹호를 제한·범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여긴다.

인권운동가를 특정 하위집단으로 분석하는 것은 다른 집단이 겪는 침해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인권운동가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모든 행위는 결국 개인, 공동체, 더 나아가 대중 전체가 인권을 누리는 데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제앰네스티(AI)는 이 보고서의 전략적·방법론적 접근방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수많은 법률 전문가와 시민사회 동료들의 피드백과 분석에 감사를 표한다. 무엇보다도 전문 지식과 개인적이고 가슴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해 주신 중국 인권 변호사들에게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명시적인 기록과 그 이면에 담긴 그들의 목소리는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해하고, 기록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안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³ The State Council Information Office defines “procuratorates” as agencies responsible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is is akin to the role of public prosecutor in other jurisdictions, albeit with the caveat that procuratorates are not under the oversight of the executive/a Ministry of Justice but rather, of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which itself reports to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Standing Committee.

4. 관련 법체계

4.1 국제인권법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고문으로 획득한 증거의 배제를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에 따라 보호되는 핵심 인권이다. 이러한 권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AT)에 명시된 국가의 구속력 있는 의무에도 반영되어 있다. 중국 정부는 1988 년에 고문방지협약(CAT)을, 2001 년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을 비준했고, 1998 년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서명했다.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 15 조제 1 항이 규정하는 '법적 확실성의 원칙'에 따라 「형법」은 어떤 유형의 행동과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 충분히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이 원칙은 자의적 적용 및 남용의 여지가 있고 자의적 자유 박탈로 이어질 수 있는 모호하고, 불분명하며,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률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법」은 정부가 표현의 자유 및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자유에 합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한을 엄격히 규정한다. 이러한 제한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하고,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필수적이고 비례적이어야 한다.⁵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는 국제인권법에서 특정 권리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로 인정되었지만, 제한은 가능한 한 최소한의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시행될 수 있으며, 엄격히 비례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는 특정하고 임박한 무력 사용 위협에 대항하여 국가의 존립 또는 영토 보전을 보호하기 위해 진정으로 그리고 입증 가능하게 의도된 것이 아니라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원용될 수 없다. 실제로 표현의 자유는 그것이 명백하고 임박한 무력/폭력의 위협을 선동하거나 국가가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당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국가안보를 근거로 제한될 수 있다.⁶ 국가는 인권 침해에 대한 반대를 억압하거나 자국민에 대한 탄압적 관행을 자행하려는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⁷

⁴ China has repeatedly stated its intention to ratify the treaty, putting it under an obligation not to do anything to defeat the treaty's object and purpos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Article 18.

⁵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tee), General Comment 34: Freedoms of opinion and expression (Article 19), 29 July 2011. UN Doc. CCPR/C/GC/34; The Global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The Tshwane Principles), 12 June 2013, Principle 3.

⁶ Johannesburg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Freedom of Expression and Access to Information, 1 October 1995, Principle 2.

⁷ Siracusa Principles on the Limitation and Derogation of Provisions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84, UN Doc. E/CN.4/1985/4.

또한 국가안보는 국제법적 기준에 의해 보호되는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와 그 밖의 인권을 행사할 권리를 부정하는 명분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표현의 자유에는 정보를 찾고 획득할 권리가 포함된다. 언론인은 「세계인권선언」(UDHR) 제 19 조에 따라 정보를 탐색하고 전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국가는 언론인을 비롯한 개인이 국가안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정당한 공익 정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⁸ 일부 기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가기밀 유출 혐의 적용 등과 같이 정보를 공개한 언론인을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공개가 국가안보에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고 해를 끼칠 가능성도 없는 경우' 또는 '정보를 아는 것에 대한 공익이 공개로 인한 해를 능가하는 경우'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⁹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권리에 관해 유엔 특별보고관(UN Special Rapporteur)이 주장한 바와 같이, 결사의 권리는 실제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목적을 포함하여 자원에 접근(요청, 수령, 활용)할 권리를 의미한다.¹⁰ 더 나아가, 특정 단체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형사 기소를 통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국가안보에 대한 가상의 위험이 아닌 실제 위험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¹¹

결사의 자유 권리에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포함된다. 단체교섭권은 이 권리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¹²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 자유로서 지극히 엄격한 요건에서만 제한될 수 있다. 공공 안전 유지 명분으로 집회를 제한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집회가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실질적이고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¹³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 또한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이는 실재하는 무력 위협에 맞서 국가의 존립,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다. 유엔자유인권위원회는 "이 기준은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만 충족될 것"이라고 규정한다. 더욱이 국가안보가 악화된 근본 원인이 인권의 억압인 경우, 이를 평화적 집회의 자유 제한 등의 추가적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¹⁴

1998 년 유엔은 '보편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개인, 집단 및 사회 기관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선언을 채택했다.¹⁵ 일반적으로 '인권운동가 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으로 알려진 이 선언은, 개인이나 집단이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나아가 국가의 인권 침해에 평화적으로 반대한 이들을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 없이 이미 국제인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일련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다.¹⁶ 일부 국가는 이 선언이 애초에 구속력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유엔 인권 조약에 근거한 다른 국제 규범¹⁷ 등은 모든 사람이 인권 사상과 원칙을 발전시키거나 논의할 권리와 평화적으로 이 같은 권리 보장을 옹호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⁸ HRCtee, General Comment 34 (previously cited), paragraph 30.

⁹ Johannesburg Principles (previously cited), Principle 15.

¹⁰ Declaration on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of Individuals, Groups and Organs of Society to Promote and Protect Universally Recognized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8 March 1999, UN Doc: A/RES/53/144, Article 13;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and peaceful assembly, report summary: "General Principles for Protecting Civic Space and the Right to Access Resources", 13 November 2014.

¹¹ HRCtee, Views: Lee v. South Korea, adopted 20 July 2005, UN Doc. CCPR/C/84/D/1119/2002, para 7.2.

¹² Right to Organiz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ILO Convention 98).

¹³ UN Human Rights Committee (HRCtee), General Comment 37: The right to peaceful assembly (Article 12), 17 September 2020, UN Doc: CCPR/C/GC/37, para. 43.

¹⁴ HRCtee, General Comment 37 (previously cited), para 42.

¹⁵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¹⁶ Ibid, Article 12.

¹⁷ UN HRCtee, General Comment 37 (previously cited), paragraph 1;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previously cited), Article 1.

변호사에 관한 국제 규범은 변호사가 표현의 자유, 신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¹⁸ 국가는 변호사가 협박, 방해, 괴롭힘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전문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¹⁹ 국제법은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²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²¹ 가족 접견권,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 공정한 처벌을 받을 권리 및 그 밖의 관련 권리를 포함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²²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밀접하게 연계된 신체의 자유 및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개인이 부당하게 구금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할 때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²³ 또한 열악한 구금 환경이나 피구금자에 대한 가혹행위, 이를 통해 받아낸 자백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행위는 고문 및 기타 학대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²⁴

4.2 중국 국내 형법

중국의 형사 범죄는 1979 년에 제정되어 1997 년에 대폭 개정된 「형법(Criminal Law)」에 따라 규정된다.²⁵ 1979 년에 채택되어 1996 년, 2012 년, 2018 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광범위하게 개정된 중국의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은 「형법」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법규를 규정하고 있다. 그 외 다른 법률도 형사 소송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SPC)과 최고인민검찰원(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SPP)이 발표하는 특정 법률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4.3 형법

「형법(Criminal Law, CL)」에는 '국가안보 위협(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범주에 속하는 범죄를 포함하여 특정 범죄에 대한 구체적 조항과 양형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AI) 자체 조사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 이 중 '분리주의(separatism)'와 '분리주의 선동(inciting separatism)', '국가 권력 전복(subversion of state power)'과 '국가 권력 전복 선동(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외세와의 결탁(collusion with foreign forces)', '간첩 행위(espionage)', '외국 기관에 국가 기밀을 불법 제공하는 행위(illegally providing state secrets to a foreign body)'와 같은 혐의는 인권운동가들을 기소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일관되게 악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⁶ 이러한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은 범죄 유형과 개인이 수행한 역할에 따라 무죄에서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¹⁸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7 September 1990, para. 23

¹⁹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previously cited), para. 16

²⁰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32: the right to equality before courts and tribunals and to fair trial (Article 14), 23 August 2007, UN Doc. CCPR/C/GC/32, para. 34.

²¹ Article 5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Article 7 of the ICCPR, Article 2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rticles 37(a) and 19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10 of 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 Article 5 of the African Charter, Article 5(2) of the American Convention, Articles 1 and 2 of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rticle 8 of the Arab Charter, Article 3 of the European Convention, Principle 6 of the Body of Principles, Articles 2 and 3 of the Declaration against Torture. HRC General Comment 32, §§6, 41, 60; Cabrera-García and Montiel Flores v Mexico, Inter-American Court (2010) §165; Gäfgen v Germany (22978/05), European Court Grand Chamber (2010) §§165-168; See Othman v United Kingdom (8139/09), European Court (2012) §§264-267.

²² Amnesty International, Fair Trial Manual, 2014, Index: POL 30/002/2014

²³ Universal Declaration, Article 3; ICCPR, Article 9(1); Article 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Article 9(1) of the ICCPR, Article 37(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rticle 16(4) of 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 Article 6 of the African Charter, Article 7(3) of the American Convention, Article 14(2) of the Arab Charter, Article 5(1) of the European Convention, Article 55(1)(d) of the ICC Statute; Section M(1)(b) of the Principles on Fair Trial in Africa; Principle III(1) of the Principles on Persons Deprived of Liberty in the Americas; See Article XXV of the American Declaration

²⁴ Such practices violate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to which China is a state party.

²⁵ After the 1997 reform, the CL was amended 12 times, most recently in 2023. National People's Congress, Criminal Law Amendment (XII)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十二)], 29 December 2023,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312/content_6923386.htm

²⁶ These appear in, respectively, Articles 103(1), 103(2), 105(1), 105(2), 106, 110, and 111 of the CL.

국가안보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개인은 정치적 권리 박탈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해당 처벌은 「형법」²⁷에 규정된 처벌로서 개인의 투표권과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행진 및 시위'의 자유²⁸를 박탈하며, 대부분의 경우 구금형이 완료된 후 다른 권리들도 함께 박탈한다.²⁹ 이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별도로 규정된 가석방, 집행유예 또는 임시 석방과는 다르다. 정치적 권리 박탈의 최장 기간은 5 년이다. 다만, 개인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정치적 권리가 박탈된다.

'공공 안전 위협' 범죄에는 인권운동가에게도 적용된 테러 혐의³⁰가 포함된다. 「형법」상 테러 혐의에는 비폭력 범죄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서적이거나 시청각 자료를 제작하여 '테러와 극단주의를 옹호하거나 테러 범죄 실행을 선동'하는 행위, 또는 '테러와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물품(및 시청각 자료)을 불법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 조항에 대한 양형 기준은 범죄의 중대성과 개인의 역할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징역 10 년까지 다양하다.

'공공질서 교란' 범죄³¹에는 '국가기밀 불법 소지', '사회질서 교란을 위한 군중 집결', '공공장소 질서 교란을 위한 군중 집결', '시비 걸기 및 소란 행위'가 포함된다. 양형 기준은 개인의 역할, 상황의 중대성, 범행 횟수에 따라 보호관찰부터 징역 10 년까지 다양하다.

4.4 형사소송법

중국의 「형사소송법(Criminal Procedure Law, CPL)」은 일반 조항, 사건 접수, 수사, 공소 제기, 재판, 형 집행에 관한 형사 피고인의 여러 절차적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본 법률³²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 이는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은 공정한 재판 보장을 성문화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본 법률에는 많은 결함이 있다. 여기에는 국가안보 범죄가 의심되거나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제 75 조는 '지정거소감시'를 규정하는데, 이는 수사관이 개인을 최대 6 개월 동안 공식 구금 시스템 밖에서 피의자가 선택한 변호인이나 가족과의 접촉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하는 조치로서, 피의자를 고문 및 기타 학대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 유엔특별절차임무수행단(UNSP)은 지정거소감시를 '비밀 격리 구금'이자 국제법상 금지된 강제 실종에 '준하는' 조치라고 규정했다.³³ 국제법상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국제앰네스티(AI)도 이러한 경우 지정거소감시의 사용이 실제로 강제 실종에 해당한다고 본다. 지정거소감시 제도는 국가 기관에 의한 자유 박탈, 가족에 대한 개인의 소재지 은폐, 법적 보호에 대한 접근 거부 등을 수반하여 해당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내몰고 있다.³⁴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 선임권에 관한 조항이 있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은 법률구조기관에 지원을 신청하여 사건 담당 변호인을 지정받을 수 있다. 다른 특정 사건에서는 경찰, 검찰원 또는 법원이 법률구조기관에 변호인 지정을 지시할 수 있다.³⁵

²⁷ It may also apply to those convicted of intentional harm, rape, arson, setting explosives, poisoning or robbery, Article 56 of the CL.

²⁸ In addition to these two sets of rights, Article 55 of the CL ("Deprivation of political rights") also clarifies that the supplemental sentence includes deprivation of the right to "hold a position in a state organ" and the right to "hold a leading position in a state-owned company, enterprise, public institution or people's organisation".

²⁹ If an individual receives a controlled release sentence and deprivation of political release sentence, they are served simultaneously as per Article 55 of the CL.

³⁰ These appear in Article 120(1-6) of the CL.

³¹ These appear in, respectively, Articles 282, 290, 291 and 293 of the CL.

³² Article 51 of the CPL.

³³ Mandates of ten UN Special Procedures, Communication to the Government of China, 24 August 2018, UN Doc: OL CHN 15/2018.

³⁴ Enforced disappearance is defined by Article 1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The prohibi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is also a *jus cogens* norm of international law, which means it is binding on all states.

³⁵ Article 35 of the CPL.

그러나 본 법률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보장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당국은 변호인이 접견을 요청한 후 48 시간 이내에 변호인이 의뢰인을 만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피의자가 국가안보나 테러 범죄로 의심받는 경우, '형사 수사 기간' 중의 접견 요청은 해당 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찰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³⁶

「형사소송법」은 고문을 통해 얻은 증거의 법정 사용을 금지하지만,³⁷ 대부분의 상황에서 본 법률은 국가에 수사 임무를 부여하는 대신 입증책임을 변호인 측에 전가함으로써 국제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³⁸ 검찰과 법원은 증거 획득에 불법적 수단이 사용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조사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고문이나 그 밖의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고문을 통해 획득한 증거의 배제를 원하는 경우, 피고인들이 관련 '단서'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³⁹ 중국 규정에 따르면, '단서'는 '불법 증거 수집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구체적인 내용과 명확하게 지목된 사람, 시간, 장소, 조치 등'으로 정의되고, 자료는 '불법 증거 수집의 피해를 반영할 수 있는 사진, 신체검사 기록, 병원 기록, 심문 기록, 심문 녹음 또는 같은 수용실에 있던 다른 사람의 증언'으로 정의된다.⁴⁰

고문을 통한 자백 강요는 중국 법률상⁴¹ 범죄로 인정되며, 최고 3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구금자에 대한 형사상 학대, 특히 피구금자에 대한 구타나 신체적 학대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3 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사안이 중대할 경우 최대 10 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⁴² 두 범죄 모두 피구금자의 장애나 사망을 초래할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 구금 후 24 시간 이내에 피의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본 법률에는 피의자가 국가안보 또는 테러 혐의로 의심받는 경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제 85 조).⁴³ 또한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가 가족을 만나거나 서신을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검찰, 법원이 사건을 수사, 심사, 심리할 수 있도록 상당히 긴 기간을 허용하며, 특히 여러 차례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국제 기준을 위반하는 장기적인 재판 전 구금이나 판결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⁴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은 의심되는 활동의 상황과 장소에 따라 검찰원(사법관 역할을 수행)이 체포를 검토하고 승인하기 전까지 최대 37 일간 개인을 구금할 수 있으며, 검찰원은 체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최대 7 일의 시간을 부여받는다.⁴⁵ 국제인권법은 구금자가 체포 후 48 시간 이내에 판사나 사법관 앞에 출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³⁶ Article 39 of the CPL.

³⁷ Article 56 of the CPL.

³⁸ UN HRCtee, General Comment 32(previously cited), para 41.

³⁹ Articles 57-58 of the CPL.

⁴⁰ Article 5: Defendants and their defenders applying for the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shall provide relevant leads and material. "Leads" refers to specific content and clear indicated persons, times, places, measures, and so forth suspected of involvement with the illegal collection of evidence; "materials" refers to photos, physical examination records, hospital records, interrogation records, interrogation recordings, or testimony of others in the same cell that can reflect the harm of the illegal collection of evidence. Article 5, People's Court Rules for Handling the Exclusion of Illegal Evidence in Criminal Cases (Provisional), 27 November 2017, <https://web.archive.org/web/20220108005413/https://www.court.gov.cn/fabu-xiangqing-75652.html>. See also, Article 127, Supreme People's Court, Interpretation on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PRC, 26 January 2021, <https://web.archive.org/web/20250311213639/http://www.jcy.gansu.gov.cn/info/1116/32759.htm>.

⁴¹ Article 247 of the CL.

⁴² Article 248 of the CL.

⁴³ Article 85 of the CPL.

⁴⁴ See, inter alia,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rticle 9(3); UN Human Rights Committee, General Comment 35: Liberty and security of person (Article 9), 16 December 2014, UN Doc. CCPR/C/GC/35, para 37.

⁴⁵ Article 91 of the CPL.

⁴⁶ UN Human Rights Council (UNHRC) Resolution 21/4: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adopted on 27 September 2012, UN Doc. A/HRC/RES/21/4, operative para. 18(a). Rule 14(2) of the Council of Europe *Rules on remand in custody* HRCtee Concluding Observations: El Salvador, UN Doc. CCPR/C/SLV/CO/6 (2010), para. 14;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UN Doc. E/CN.4/2003/68 (2002) para. 26(g) and UN Doc. A/65/273 (2010) para. 75;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Concluding Observations: Venezuela, UN Doc. CAT/C/CR/29/2 (2002) para 6(f); *Kandzhov v Bulgaria* (68294/01), European Court (2008) paras 66-67.

경찰은 사건을 검찰원에 넘겨 기소하기 전에 최대 2 개월간 수사할 수 있지만, 다른 '중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총 5 개월까지 수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수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최고인민법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수사 기한이 무기한 연장될 수도 있다.⁴⁷ 사건이 검찰원으로 이관되면 45 일 이내에 피의자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⁴⁸ 검사는 최대 2 회까지⁴⁹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낼 수 있고, 이때 경찰은 최대 1 개월 수사가 가능하며, 이후 기소 결정 기간이 재설정된다. 요약하면, 이러한 법 조항들은 초기 구금부터 기소까지 13 개월 반, 또는 초기 수사가 '재개'되는 경우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게 한다.

검찰원이 피의자를 기소하고 사건을 법원에 이송하면, 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3 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은 최고인민법원이 승인할 수 있는 여러 기한 연장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재판 절차가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⁵⁰

4.5 사법 해석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에 의한 일부 사법 해석은 「형법」의 시행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2001 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사법 해석은 사건 당시 유효한 관련 해석이 없는 경우, 모든 사법 해석의 소급 적용을 허용한다.⁵¹ 피고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의 법률 소급 적용은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금지된다.⁵²

2013 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형법」상 '시비 걸기 및 소란 행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사법 해석을 발표했다. 본 해석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 제 293 조제 4 항에 따른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⁵³

⁴⁷ Articles 156-160 of the CPL.

⁴⁸ Article 172 of the CPL.

⁴⁹ Article 175 of the CPL.

⁵⁰ Article 208 of the CPL.

⁵¹ Supreme People's Court and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Regulations of the Supreme People's Court and the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on the Time Effect of the Application of Criminal Judicial Interpretations," Judicial Interpretation No. 5(2001), December 2001.

⁵² See ICCPR, Article 15(1).

⁵³ Supreme People's Court and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Interpretation on Several Issues Regarding the Applicable Law in Cases of Using Information Networks to Commit Defamation and Other Such Crimes", Judicial Interpretation No. 21(2013), 10 September 2013, https://www.spp.gov.cn/spp/zdgz/201309/t20130910_62417.shtml.

5. 형법 조항의 불명확성 및 남용

5.1 모호하고 애매하며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

국제앰네스티(AI)는 중국 검찰원과 법원이 인권운동가를 기소할 때 몇 가지 모호하고 포괄적인 형사 혐의를 활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검토 대상 사건 68 건 중 인권운동가를 유죄로 판결하는 데 사용된 상위 3개 형사 혐의는 「형법」 제 105 조제 2 항 '국가권력 전복 선동죄'(22 건), 「형법」 제 293 조 '시비 걸기 및 소란 행위죄'(17 건), 「형법」 제 105 조제 1 항 '국가권력 전복죄'(14 건)였다.

1997 년 중국이 '전복' 및 '전복 선동' 죄를 적용하기 위해 「형법」을 개정 한 직후부터, 유엔자의적구금실무단(WGAD)은 이러한 범죄의 '정의가 포괄적이고 부정확하여 오용 및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기술했다.⁵⁴ 해당 지적은 연구 기간을 포함하여 실무단의 방문 이후 발행된 여러 의견서에서도 반복되었다.⁵⁵ 이러한 범죄 조항은 처음 제정된 시점부터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관련 우려를 해소하지 않았으며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수정하지도 않았다. 적어도 2019 년부터 유엔자의적구금실무단(WGAD)은 중국에 「형법」 제 105 조제 2 항을 폐지하거나 국제 인권 의무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해 왔다.⁵⁶ 2015 년 유엔고문방지위원회는 국가안보 위해 범죄('전복 선동'과 '전복' 포함)와 '시비 걸기'의 정의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하며 중국 정부에 보다 명확한 정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⁵⁷

"변호사의 업무, 시민의 일상, 인민의 권리.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국가권력 전복'으로 간주했다. 이 판결을 어떻게 '적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⁵⁸

⁵⁴ UN 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WGAD), report: Visit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2 December 1997, UN Doc. E/CN.4/1998/44, para. 45.

⁵⁵ For reference, please see WGAD Opinions 15/2011, 3/2016, 7/2017, 36/2019, 13/2020 and 69/2021.

⁵⁶ WGAD Opinion 15/2019, paras. 33–35. See also, WGAD Opinion 41/2022, para. 42.

⁵⁷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T), Concluding Observations: China, 3 February 2016, UN Doc. CAT/C/CHN/CO/5, para. 18, 36–37.

⁵⁸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a Chinese lawyer.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비 걸기' 혐의의 성격과 남용에 대한 비판은 최근 중국 내 법학자 및 입법자들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⁵⁹ 해당 죄목은 국제 인권 기구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2024 년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시비 걸기'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해당 조항의 개정과 동 법률에 따라 구금된 인권운동가들의 석방을 중국에 촉구했다.⁶⁰

"중국 특유의 권력 역학 관계 때문에 [당국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 즉 어떤 행동이나 행위든 그것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⁶¹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우려는 법 적용 과정에서 현실이 됐다. 중국 법원의 이러한 조항에 대한 해석은 여러 사례에서 모호했다. 단일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는 행동 요소에 일관성이 없었다. 일부 개인은 소셜미디어에 시위에 관한 댓글이나 사진을 게시하는 것과 같이 본질적으로는 유사한 행동에 대해서도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권력 전복 선동'과 '전복' 등 국가안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세 명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는데, 이들은 '시비 걸기'와 '공공장소 질서 교란을 위한 군중 집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다른 인권운동가들의 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근거로 처벌받았다.⁶²

이는 당국이 평화적 인권 행사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해 모호하고 중복된 범죄 규정들을 남용하고 있으며, 정당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형사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과 법적 확실성 측면 관련 국제법상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

중국의 사법기관이 「형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내놓는 경우, 이는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독립적인 정부 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권을 행사한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형사 기소의 범위를 좁히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2013 년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사법 해석은 '시비 걸기' 조항을 확대하여 인터넷을 '허위 정보' 유포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공공 공간으로 정의했다.⁶³ 따라서 「형법」상 이미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이 잠재적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표현을 포함하도록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법 해석은 한 인권운동가에 대한 판결에서 나타났다. 법원은 그가 트위터(현 엑스·X)에 시사 및 인권 문제에 관한 게시물과 동영상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시비 걸기' 죄목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했다.⁶⁴ 법원은 트위터가 중국에서 차단되어 있어 중국의 공공장소를 교란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주장을 기각했다.

5.2 정당한 목적 없는 국가안보 범죄 혐의의 광범위한 사용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68 건 중 41 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되거나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명시되어 있는 행위 위반을 이유로 인권운동가 피고인들이 기소된 혐의와 관련이 있었다.⁶⁵ 법령이나 법원 그 어디에서도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유엔자의적구금실무단(WGAD)은 「형법」이 제정된 이래로 "국가안보를 해칠 수 있거나 해칠 가능성이 있는 행위의 성질을 결정하는 기준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국가안보법] 법령의 일부로 남아 있는 한, 그것은 기본적인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라고 언급했다.⁶⁶

⁵⁹ China Daily, 'Legislator proposes revision of vague 'picking quarrels' law', 21 March 2023, <https://www.chinadaily.com.cn/a/202303/21/WS64190f5ea31057c47ebb59f9.html>.

⁶⁰ OHCHR, 'Türk's global update to the Human Rights Council', 4 March 2024, <https://www.ohchr.org/en/statements-and-speeches/2024/03/turks-global-update-human-rights-council>

⁶¹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Wang Quanzhang.

⁶² Documentation for cases AKN, VWG and KRT.

⁶³ SPC and SPP Legal Interpretation No. 21 (2013), Article 5.

⁶⁴ Documentation for case YSO.

⁶⁵ In addition to the 36 cases noted above, under "subversion of state power" or "inciting subversion of state power", five additional cases involved charges of inciting separatism (2, case nos. 43 and 44), illegally providing or possessing state secrets (2, case nos. 11 and 17), and espionage (1, case no. 45).

⁶⁶ WGAD, *Visit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viously cited), para. 48.

중국 정부는 1997 년 채택된 「형법」 내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개정하지 않았으며, 그 대신 2015 년에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평가한 「국가안전법(National Security Law)」을 제정했다.⁶⁷

국제법 기준에 따르면 국가안보 개념을 인권 제한에 사용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력 사용이나 무력 사용의 위협에 근거한 엄격한 제한 하에서만 허용된다. 국가안보 혐의로 기소된 41 건의 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전체 68 건의 사건 중에서 사법 당국이 폭력 행위나 폭력 행위 위협을 인용한 경우는 단 3 건에 불과했다. 그 3 건에서 제시된 어떤 증거도 국가의 존립에 위협을 가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만한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3 건 모두 절차적 위반과 관련되어 있었다.⁶⁸

반대로, 국가안보 혐의로 기소된 41 건 중 11 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인권운동가의 비폭력 활동인 글쓰기, 인권 옹호 활동 또는 운동 조직 구축이 국가권력을 전복하거나 전복을 선동하려는 의도의 증거라고 강조했다.⁶⁹ 인권운동가 친용민(Qin Yongmin)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면 기소장에는 37 개의 개별 '증거'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의 과거 투옥과 관련된 온라인 게재 글, '정부 개혁과 평화적 권력 이양'에 관한 기사, 다당제 옹호 발언, 중국독립중문필회(Independent Chinese PEN) 웹사이트의 게시물, 채팅 플랫폼 QQ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글을 공유한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⁷⁰

판사들은 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은] 국가권력을 전복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국가권력 전복죄의 행위는 폭력적 수단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사들은 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3 년을 선고했다.⁷¹

항소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이 입장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피고인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국가권력 전복죄의 행위는 폭력적 수단의 사용을 포함하면서도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를 성립시키기 위해 국가권력이 실제로 전복되었는지 여부는 필요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국가권력 전복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

국가안보 혐의와 관련된 41 건 중 36 건은 '전복' 및 '전복 선동' 혐의와 관련되었다. 국제앰네스티(AI)는 이 36 건 모두에서 검찰과 법원 판결이 범죄 행위의 공통 요소를 인용했음을 확인했다. 검찰과 법원은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포함하여 의견과 표현을 정당하게 행사함으로써 피고인이 정부나 중국공산당(CCP)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법은 타인의 권리와 명예를 존중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적이고 좁은 범위의 규제를 허용하지만, 중국 사법체계는 이러한 사건들에서 중국 정부나 그 정책을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결했으며, 이는 허용 가능한 국제 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SPC)을 설립한 근거인 중국 「헌법」은 중국공산당(CCP)의 지도력이 정치 체제의 핵심적 특징이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그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명시한다.⁷² 중국공산당(CCP)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당 위원회가 설립되어 '정치-법률 업무'에 관하여 사법기관을 '지도'한다(이러한 위원회는 정치법률위원회 또는 정법위(政法委)로 알려져 있다).⁷³ 독립적인 재판소에서 심리 받을 권리에 관한 국제 기준에 따르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에 기반하여 견제와 균형을 보장해야 한다.⁷⁴

⁶⁷ OHCHR, 'UN human rights chief says China's new security law is too broad, too vague', 7 July 2015, <https://www.ohchr.org/en/press-releases/2015/07/un-human-rights-chief-says-chinas-new-security-law-too-broad-too-vague>.

⁶⁸ In two cases (QAV and SHX) the individuals denied the charges and there were numerous violations of their right to a fair trial, and in the third (HZO) there were fair trial rights violations and the allegation was related to an abstract comment rather than a specific threat.

⁶⁹ Documentation for cases OLV, DXP, BGY, SGH, TYP, GKS, YCL, ZMP, CTZ, IMD and UBW.

⁷⁰ Documentation for case TYP.

⁷¹ Ibid.

⁷² Article 1,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18.

⁷³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Regulation on the Communist Party of China's Political-Legal Work', 18 January 2019, https://www.gov.cn/zhengce/2019-01/18/content_5359135.htm.

⁷⁴ 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Principle 1; Principles on Fair Trial in Africa, sections A(4)(a), (f)- (g); African Commissioner for Human and People's Rights, Views: *Lawyers for Human Rights v Swaziland* (251/2002), African Commission (2005) para. 56

2014 년,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중국에 대한 정기 검토에서 '중국의 정치 기관이 사법부에 간섭하는 모든 형태를 방지'할 것을 중국에 촉구하는 권고를 발표했다.⁷⁵ 다음 해, 유엔고문방지위원회(UN Committee against Torture)는 중국 정부에 정치법률위원회가 '사법절차에 대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⁷⁶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한 사례는 사법제도가 중국공산당(CCP)을 방어하기 위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예시를 제공한다. 사법제도는 당에 대한 비판을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이후 그러한 발언을 한 개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투옥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2016 년 한 인권운동가는 징역 19 년을 선고받았는데, 1 심 법원은 온라인 게시, 해외 웹사이트에 기사 작성 및 게시, 국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 등의 행위가 '전복 선동'과 '해외로의 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검찰원의 기소를 인정했다.

해당 인권운동가에 대한 유죄 판결 증거에는 개인 디지털 기기에 대한 광범위한 검사, 온라인에서 '경찰 관련 이미지를 불법으로 제공'한 게시물 문서화, (인터넷 방화벽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을 우회하는 소프트웨어 사용, 국제 언론 매체의 인터뷰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행위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되었다.⁷⁷

항소법원은 1 심 판결에 동의하며 유죄 선고를 유지했고, 중국공산당(CCP)에 대한 비판은 전복 선동과 다름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판사들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피고인은] 중국 「헌법」이 정한 기본 국가 정책과 사회주의 체제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며, 중국공산당(CCP)이 이끄는 사회주의 정권을 공격하고 부정했다... 중국의 국가 체제와 정치 체제는 중국공산당(CCP)의 지도력 아래 인민의 의지를 구현한 것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항소법원은 해당 인권운동가의 "이러한 표현 행위가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 전복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⁷⁸

또 다른 일련의 사건들은 법원이 경찰과 검사가 제공한 증거를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데 있어 얼마나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지를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AI)는 두 명의 언론인과 관련된 법원 문서를 검토했는데, 한 명은 국가기밀 불법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특정 문서를 해외 거주 개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후자는 외국 기관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안보 범죄로 간주되었다.⁷⁹ 당국은 두 사건 모두에서 국제법의 기준에 따라 해당 문서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어떠한 해를 끼치는지 설명하지 않았으며, 공개로 인한 피해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대하다는 점도 입증하지 않았다. 두 사건의 변호인은 문서가 부적절하게 기밀로 분류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떤 내용이 국가기밀로 분류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단순히 기밀 분류 절차가 '합법적이고 유효하다'고만 언급하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해당 문서들은 판결문에 수록되지는 않았으나, 이를 '국가기밀'로 판단할 합리적인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위 사건 중 하나인 시민 기자이자 온라인 인권 기록 플랫폼 '64 텐왕(64 Tianwang)' 설립자 황치(Huang Qi)의 사건에서 증거로 제시된 문건은 지역 행정 보고서와 정책 브리핑에 관한 것이었다.⁸⁰ 다른 사건은 일반적으로 '9 호 문건(Document No. 9)'으로 알려진 당 내부 이데올로기 지침에 관한 것으로, 이 문건은 오래전부터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 문건은 정부와 당 기관에 '보편적 가치 옹호'와 '서방의 언론관 선전', '언론과 출판 체계는 당의 규율에 따라야 한다는 중국의 원칙에 대한 도전' 등 7 가지 '허위 이데올로기 경향, 입장 및 활동'에 대해 경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⁸¹ 법원의 논의 과정에서, 이 문서 중 어느 것도 민감한 국방이나 정보 관련 내용을 암시하는 용어를 담고 있다고 언급되지 않았으며, 후자의 문서는

⁷⁵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 Concluding Observations: China, 7 November 2014, UN Doc. CEDAW/C/CHN/CO/7-8. para. 15(b).

⁷⁶ CAT, Concluding Observations: China (previously cited), para. 23(d).

⁷⁷ Documentation for case GVL.

⁷⁸ Ibid.

⁷⁹ Documentation for cases NYT and LZN.

⁸⁰ Documentation for case LZN.

⁸¹ China File, "Document 9: A ChinaFile Translation", 8 November 2013, <https://www.chinafile.com/document-9-chinafile-translation>

국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중국공산당(CCP)과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문서의 성격과 일반적인 접근성을 고려할 때, 국제 기준상 해당 문서들이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수십 년 동안 거의 모든 문서를 국가기밀로 지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해 왔다.⁸² 국가기밀의 정의를 둘러싼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당국은 2024 년에 「국가기밀 보호법(Law on the Protection of State Secrets)」⁸³에 대한 일련의 개정안을 채택하여 국가기밀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을 더 제한하고, 기밀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며, 그 공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했다.⁸⁴

⁸² Amnesty International, *State secrets – a pretext for repression* (Index: ASA 17/042/1996), 13 May 1996,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7/042/1996/en/>

⁸³ China, Law on the Protection of State Secrets, 2024, <https://www.chinalawtranslate.com/en/secrets-law-2024/>.

⁸⁴ Amnesty International, *The State of the World's Human Rights: April 2025*, Index: POL 10/8515/2025, 28 April 2025, <https://www.amnesty.org/en/location/asia-and-the-pacific/east-asia/china/report-china/>, p. 129.

6. 기본적 자유의 조직적 범죄화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68 건 중 압도적 다수인 63 건은 표현의 자유,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행사한 행위가 형사 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인권운동가와 관련되었다. 나머지 5 건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이동의 자유 침해와 관련되었지만,⁸⁵ 검토 대상 사건 대부분은 후속 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공정한 재판 침해와 관련되었다.

6.1 의견 및 표현의 자유

국제앰네스티(AI)의 조사 결과, 68 건 중 32 건이 주로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되어 있었다. 중국 법원이 처벌한 행위 유형에는 기사 작성 및 게시, 서적 소유 및 공유, 온라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물 올리기, 언론 매체 인터뷰 등이 포함되었다. 온라인상의 표현 행위는 반복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32 건 중 27 건이 인권운동가의 온라인 발언과 관련되어 있었다.

표현의 자유 관련 사건 32 건 대부분에서 인권운동가는 '전복 선동'(20 건) 또는 '시비 걸기'(6 건)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⁸⁶ '전복 선동' 사건 대부분에서 검찰원과 법원은 국가의 정치 체제나 인권 상황을 비판하거나 정부나 중국공산당(CCP)을 직접 비판한 개인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⁸⁷ '시비 걸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권운동가의 사건에서도 유사한 범위의 내용이 인용되었다. 법원은 해당 인권운동가들이 정부 지도자나 정책에 대해 비판하거나 논평하거나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⁸⁸ 특히, 한 여성 인권운동가는 주로 여성의 권리와 토지 문제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전복 선동' 유죄 판결을 받았다.⁸⁹

⁸⁵ Documentation for cases VUJ, RNB, QAV, DBF and JYH.

⁸⁶ The other six cases involved charges of espionage, terrorism, inciting separatism, state secrets or defamation charges, as per documentation for cases SHX, LUM, LQO, CFW, NYT and LZN.

⁸⁷ Documentation for cases JLM, QYN, DXP, AKN, KMC, FEJ, YRB, XMU, IDL, EFN, GKS, YCL, ZMP, VWG, NEK, CTZ, PRQ, HXN, UBW and GVL.

⁸⁸ Documentation for cases XZQ, PKB, TQE, BZX, YSO and DWH.

⁸⁹ Documentation for case EFN.

이러한 사건들은 '전복 선동'과 '시비 걸기' 범죄 조항의 모호하고 과도하게 광범위한 규정이 당국으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반대 의견을 겨냥하고 법을 오용하여 정당한 표현을 범죄화할 수 있게 함을 보여준다. 특히 국가안보 범죄와 공공질서 범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법원의 다양한 범죄 조항 적용은 사법적 남용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범죄 조항의 적용을 정당화하는 주요 증거가 국제법상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표현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온라인 상의 발언을 이유로 인권운동가가 표적이 된 대표적인 사건은 2009 년 '전복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온라인에 기사를 게시한 이유로 징역 11 년을 선고받은 중국 노벨상 수상자 류샤오보(Liu Xiaobo) 사건이다. 그가 작성한 글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정치 개혁을 위한 '08 헌장(Charter 08)' 선언문으로, 처음에 300 명 이상의 중국 국민들이 서명했다. 본 선언문은 중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서명한 지 10 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여 발표된 것으로, 류샤오보가 말한 "책임감 있고 건설적인 시민의 정신으로... 국가 행정, 시민의 권리와 이익, 사회 발전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구체적 입장"을 뒷받침하며 20 세기 중국 정치사를 개괄하고 있다.⁹⁰ 법원은 판결문에서 도메인 이름, 페이지 방문 횟수, 해당 글을 전제한 웹사이트 수, 댓글 및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기타 페이지를 "인터넷의 미디어 기능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비방 기사를 게시"함으로써 '전복 선동' 범죄를 실행한 증거로 인용했다.

판결문에 포함된 발췌문은 아래 문장에 해당하며, 아래 문장은 '08 헌장'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⁹¹

"9. 결사의 자유: 시민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라. 시민단체 설립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라. 정당 금지를 해제하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 활동을 규제하라. 일당 권력 독점의 특권을 폐지하라. 정당 활동의 자유와 정당 간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확립하라. 정당 정치를 정상화하고 법적으로 규제하라."

"18. 연방 공화국: 평등과 공정의 태도로 지역 평화와 발전을 유지하는 데 참여하고,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만들라. 홍콩과 마카오의 자유 체제를 보호하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제로 평등한 협상과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본토와 대만의 화해 방안을 모색하라. 모든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한 가능한 경로와 제도적 청사진을 현명하게 탐색하고, 민주적이고 입헌적인 정부의 틀 아래 중화연방공화국을 설립하라."

6.2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68 건 중 18 건에서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가 침해되었다. 18 건의 결사의 자유 침해 사건 중 14 건은 인권운동가들이 '전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이다.⁹²

'전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4 명의 인권운동가 중 4 명의 경우, 사법 당국이 '전복'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한 그들의 행위는 자금 모금, 보고서 작성, 교육 개최와 같은 비정부기구 운영의 일상적 활동의 특징과 완전히 일치한다.⁹³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 창사 푸닝(Changsha Funeng)과 관련된 3 건의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교육 활동은 피고인들이 "변호사의 권리 보호와 중국 사법 체계를 공격하는 그 밖의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요청하고 실행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⁹⁰ Hong Kong Free Press (HKFP), "In Full: Charter 08 – Liu Xiaobo's pro-democracy manifesto for China that led to his jailing", 14 July 2017, <https://hongkongfp.com/2017/07/14/full-charter-08-liu-xiaobos-pro-democracy-manifesto-china-led-jailing/>

⁹¹ HKFP (previously cited).

⁹² The other four cases involved charges of "inciting subversion" (2) and "gathering a crowd to disrupt social order" (2).

⁹³ Documentation for cases ZUR, VCA, TYP and ONU.

법원은 교육훈련(및 강사 훈련)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이용하여 관련 인원이 부정적 정보를 유포하도록 선동하는 방법과 기법”도 포함되었다고 언급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은 유사한 활동이 '전복 선동'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 명은 비정부기구 책임자로서, 기소장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빌려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을 채용하고, 자금을 신청하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사회 문제와 인권에 관한 연례 보고서 6 건을 발간”했다. 다른 한 명은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인 국제인권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가 제공하는 교육을 포함한 비정부기구 교육에 참석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이러한 해외 기관에 신청하여 '개인 자금' 약 4,000 유로를 받았다.⁹⁴

유사한 행동을 기소하는 데 사용된 서로 다른 범죄 혐의는 범죄 조항의 본질적인 모호성을 다시 보여주었으며, 법률의 모호한 정의가 인권의 정당한 행사를 단속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전복'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14 명 중 7 명은 유사한 사상을 가진 다른 인권운동가와 느슨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그들이 정치 개혁에 관한 비폭력적 사상을 논의한 사적 모임이 법정에서 '전복' 행위의 증거로 제시되었다.⁹⁵ 이 7 건 중 3 건에서 인권운동가는 1990 년대 후반에 활동이 금지된 '중국민주당(China Democracy Party)'과 같은 스스로 정당임을 표방한 조직에 관여한 혐의로 '전복'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⁹⁶ 항소법원은 '중국민주당'이 조직이 아닌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모임”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소위 '중국민주당'은 불법 조직이며, 그 목적과 목표는 중국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다”라며 기각했다.⁹⁷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국제앰네스티(AI)는 이것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본다.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사건 중 국가안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변호사들과 관련된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이 기소 근거의 일부가 되었음이 명백했다. 인권 변호사가 '전복' 또는 '전복 선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5 건의 사건 문서에서 검찰과 법원이 변호사로서의 전문적 업무나 구금자 가족을 지원한 것을 범죄 활동으로 기소했음이 드러났다. 당국은 이들이 “사법기관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법 체계를 비방하고 공격”하기 위해 “주목받는 사건을 과대 선전”했다고 비난했다.⁹⁸

18 건의 결사의 자유 사건 중에는 체포 당시 노동자 권리 단체의 직원이었던 활동가 두 명의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공장 노동자들이 권리를 위해 단체 교섭을 하도록 지원한 것이 ‘사회질서를 교란하기 위해 군중을 집결’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⁹⁹ 법원 판결문은 국제인권법과 명목상으로는 중국 국내법에 따라 보호받는 단체교섭과 평화적 집회의 일반적 요소를 범죄 행위로 규정했다.

“[해당 단체]는 노동자 대표들이 공장 내에서 집단 파업, 현수막, 구호, 행진과 같은 급진적 방법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를 바랐으며...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종업원들이 집단의 힘을 사용하여 공장에 압력을 가해야만 공장과의 단체 교섭에 성공할 수 있다고 노동자 대표들에게 말했다.”¹⁰⁰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68 건 중 13 건에서 평화적 집회의 권리가 침해되었다. 이 13 건 중 8 건에서 당국은 '시비 걸기' 혐의를 적용했고, 나머지 5 건에서는 '공공장소의 질서를 교란하기 위한 군중 집결' 혐의가 적용되었다.¹⁰¹ 어떤 경우에도 법원은 집회를 폭력적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폭력적이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폭력으로 위협하거나 심각한 재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이러한 세부사항이 결여된 상태라면, 해당 행위들이 시위 참가자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을 만큼 국제법상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⁹⁴ Documentation for cases SGH and ABC.

⁹⁵ Documentation for cases OLV, BGY, HZO, AXE, KRT, IMD and LJL.

⁹⁶ Documentation for cases TRV, MBD and ZTC; Human Rights Watch, *Nipped in the bud: the suppression of the China Democracy Party*, 5 January 2000, <https://www.hrw.org/report/2000/09/01/china-nipped-bud/suppression-china-democracy-party>.

⁹⁷ Documentation for case TRV.

⁹⁸ Documentation for cases AKN, BGY, IDL, AXE, VWG and LJL.

⁹⁹ Documentation for cases WAK and ZVE.

¹⁰⁰ Documentation for case WAK.

¹⁰¹ Documentation for cases WDF, ECI, GMX, HRA, RSK, UDL, QIW, NDJ, MJQ, XLR, MQR, KZB and AFO.

평화적 집회의 권리와 관련된 5 건의 사건에서, 인권운동가는 행정 결정에 불만이 있는 개인이 상급 정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중국의 민사 절차인 '청원(petitioning)'을 하고 있었는데, 사법 당국은 이를 '비정상적 청원'으로 규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¹⁰² 한 사건의 판결문은 해당인이

"오전 10 시경... 차오양구(Chaoyang District) 산리툰(Sanlitun)에 있는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건물 앞 도로변에서 청원 자료를 들고 비정상적 청원을 했으며...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으로 가서 비정상적 청원을 했으며... 베이징 천안문 광장으로 가서 불법 청원을 했으며... [그리고] 2013 년 6 월부터 2015 년 1 월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언급했다.

6.3 국제 교류 관련 혐의 적용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는 '모든 매체를 통해 국경을 초월하여' 정보와 사상을 전달할 권리가 포함된다.¹⁰³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는 또한 자금 출처를 불문하고 국내외에서 자원을 구하고, 획득하고, 사용할 자유가 암묵적으로 포함된다.¹⁰⁴ 그러나 중국 법원은 국가안보와 '외국 간섭'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해석을 적용하여 외국인이나 외국 기관과의 다양한 유형의 교류를 범죄로 간주했다.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68 건 중 39 건(국가안보죄 33 건 및 기타 범죄 6 건)에서 중국 사법부는 인권운동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며 그 이유로 해외 교류 활동을 들었다.¹⁰⁵ 검찰원이나 법원이 인용한 가장 일반적인 범죄 행위는 국제기구, 언론 매체, 웹사이트 및 개인과의 연관성이었다. 검찰이나 법원이 규정한 행위 유형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되었다.

- 뉴욕타임스(New York Times)¹⁰⁶와 같은 국제 언론 매체에 인터뷰를 제공하거나 정보원 역할을 하는 행위
- 거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국제(원문 그대로: 비중국) 기구로부터 자금을 받는 행위¹⁰⁷
- 중국어 인권 정보 사이트인 보쑤(Boxun)¹⁰⁸와 같은 해외 웹사이트에 기사를 게시하는 행위
- '해외 적대 세력(overseas enemy element)¹⁰⁹이 포함된 한 사건의 경우, 국제기구나 외국인과 교류하는 행위
- 국제인권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¹¹⁰를 명시적으로 언급한 한 사건의 경우, 국제기구가 주최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행위

법원은 이러한 국제적 관계 형성이 해외에서 정부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국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했다.¹¹¹ 검토 대상 사건 중 12 건에서 당국은 국제기구나 개인을 '적대적' 또는 '반중국'으로 규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증거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안보 관련 혐의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¹¹²

¹⁰² "Abnormal" petitioning is when an individual appeals directly to the province's capital city or the Central Government in Beijing. The rules around petitioning are governed by the State Council's Regulations on Letters and Visits [国务院信访条例], 2005. See also, Xujun Gao and Jie Long, "On the Petition System in China", 2015, <https://researchonline.stthomas.edu/esploro/outputs/journalArticle/On-the-Petition-System-in-China/991015130856403691>.

¹⁰³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19.

¹⁰⁴ These constituent rights are implicit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20, and in the UN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Art.13. They are elaborated, to include the consideration of access to resources, in the work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association and assembly, Report, 24 April 2013, UN Doc. A/HRC/23/39.

¹⁰⁵ Of the six non-national security crimes, the individuals were convicted of "picking quarrels" (4), "defamation" (1), and "illegally crossing national borders" (1).

¹⁰⁶ Documentation for case LUM.

¹⁰⁷ Documentation for case VCA.

¹⁰⁸ Documentation for case QYN.

¹⁰⁹ Documentation for case YRB.

¹¹⁰ Documentation for cases ABC, ZUR and VWG.

¹¹¹ Documentation for cases PKB, ZUR, VCA, LQO, LUM and ONU.

¹¹² Documentation for cases ZUR, AKN, BGY, VCA, AXE, KRT, ONU, VWG, NEK, PRQ, GVL and LJL.

중국 법률은 국제적 교류와 연관된 사건의 상당수에서 피고인이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합리적 우려를 낳는다. 이는 피고인들이 국제인권법상 보호받는 합법적 활동을 수행한 상황이며, 해당 활동에 국제법상 금지된 행위가 포함되었다는 구체적 입증조차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문제다. 「형법」 제 106 조는 “해외 기관, 조직, 개인과 공모하여” 전복 또는 분리주의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이 “엄중히 처벌”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국제적 연관성 자체가 형량 가중의 근거가 됨을 뒷받침한다.¹¹³

이러한 위험은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6 건의 사례에서 입증되었는데, ‘공모’의 예로는 ‘해외 뉴스 온라인 회의 참여’, 외국 언론 매체의 ‘인터뷰 대상자 역할 수행’, ‘해외 인력의 도움으로... 해외 서버 임대’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¹¹⁴ 그러나 법원은 증거로 제시된 활동 중 무엇이 ‘공모’에 해당하는지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 행위자와의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공모’라는 용어의 정의가 부재함과 법원이 충분한 구체성이나 명확성이 없이 여러 조항을 동시에 해석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결코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될 합법적인 발언과 행위에 대해 더 무거운 형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¹¹³ Article 106 of the CL states “Where a crime prescribed in Articles 103 [inciting/separatism], 104 [armed insurrection] or 105 [inciting/subversion] of this Chapter is committed in collusion with an establishment, organization or individual outside the territory of China, follow the provisions of those articles to punish it sternly.”

¹¹⁴ Documentation for cases ABC, DXP, SGH, TYP, LUM and YCL.

7.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반복적 침해

국제앰네스티(AI)가 68 건의 사건에 대한 102 개의 사법 문서를 검토한 결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반복적 침해가 입증되었다. 많은 사건에서 법원 문서는 국제앰네스티(AI)가 10 년 이상 인권운동가의 사건에서 기록해 온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준다. 즉, 자의적이고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구금으로부터의 자유, 고문 및 기타 학대로부터의 자유, 자유롭게 선택한 변호인을 접견할 권리 및 외부 세계와 소통할 권리가 중국 당국에 의해 상습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구금자(이 경우, 인권운동가)와 더 넓은 의미의 인권운동가 집단 및 시민사회 전반에 중대하고 조직적인 해를 초래한다. 판결이 선고된 모든 검토 대상 사건(68 건 중 67 건)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 사건들에 연루된 개인들 중 3 명을 제외한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으며, 최소 징역 18 개월부터 최대 2 년간 집행이 유예되는 사형에 이르기까지의 형을 선고받았다.¹¹⁵

7.1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국제인권법은 자유에 대한 권리와 불법 구금의 금지를 보장하지만, 국제앰네스티(AI)는 68 건 모두가 인권운동가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63 건의 사건에서 법원의 판결이 표현,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를 대부분 '범죄'로 간주한 것이 명백하다. 나머지 5 건의 사건에서는 기본적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있지만, 국제앰네스티(AI)는 기소가 정당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들 역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를 특징으로 하며, 이로 인해 여전히 자의적 구금의 정의에 부합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비밀 구금 역시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¹¹⁶

¹¹⁵ In case VWG, no custodial sentence was handed down (though the individual had spent over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another two individuals (cases BGY and ZVE) received suspended sentences after pleading guilty. Case NEK had not gone to trial as of the time of writing.

¹¹⁶ Articles 2 and 17(1) of the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 UN Mechanisms Joint Study on secret detention, UN Doc. A/HRC/13/42 (2010) §§18-21; WGAD Opinion 14/2009 (the Gambia), UN Doc. A/HRC/13/30/Add.1 (2010) pp187-191 §§19-22; Salem Saad Ali Bashasha v The Libyan Arab Jamahiriya, HRC, UN Doc. CCPR/C/100/D/1776/2008 (2010) §7.6; European Court: Chitayev and Chitayev v Russia (59334/00), (2007) §§172-173, El-Masri v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39630/09) Grand Chamber (2012) §§230-241.

대부분의 경우 법원 문서에는 개인의 체포 경위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공무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여러 변호사 및 피해자와의 면담 결과에 따르면 그러한 절차가 전혀 준수되지 않거나, 엄격하게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며, 구금자와 가족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특히 체포에 관련된 문서 및 그 밖의 경찰 문서의 경우에 그러하다.

"우리를 체포했을 때 그들은 우리 가족에게 어떤 문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전혀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¹¹⁷

"경찰이 새벽에 나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우리 집의 인터넷과 전기를 끊고, 체포 영장과 같은 법적 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강제로 침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서류도 주지 않았습니다."¹¹⁸

일반적으로 중국 법률은 가족에게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지만, 특정 사건에서는 이 서류에 제한된 정보만 포함될 수 있으며, 지정거소감시의 경우에는 규정상 개인의 소재지와 같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없다.

검토 대상 사건 68 건 중 15 건에서 인권운동가가 국제앰네스티(AI)가 국제법상 강제실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제도인 지정거소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지정거소감시 상황에 놓인 개인은 고문이나 그 밖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그 밖의 학대)을 받을 위험이 더 높으며, 실제로 지정거소감시 상황에 놓인 인권운동가 중 4 명은 구금 중 고문 또는 그 밖의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더 나아가 고문을 통해 얻은 불법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¹⁹

"저는 지정거소감시 기간이 제가 무너진 주요 시점이었다고 생각해요... 법치 이전 시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경찰이 '아무도 네가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여기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다. 너의 가족은 그냥 네가 사라졌다고 생각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¹²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심문은 구치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지정거소감시 기간 중 심문하는 사례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백을 강요당할 뿐만 아니라 고문까지 함께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¹²¹

분석 대상 68 건 중 24 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최초 적용된 체포 혐의와 최종 유죄 판결 혐의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기소 내용이 변경되는 것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이나, 본 조사에서 포착된 혐의 변경 양상은 사법권 남용의 위험성을 시사하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즉, 독립적인 감독기구의 감독을 받지 않는 검찰, 국제법상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행위나 발언이 유죄의 증거로 인용되는 실태, 그리고 더 가혹한(국가안보 관련) 조항이 적용됨으로써 지정거소감시 기간을 포함한 전방위적 인권 침해 가능성이 심화된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그들은 내 머리에 검은 봉투를 씌우고 내 입에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검은 방에 가뒀습니다. 3 일 후 그들은 공식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행정 구금, 형사 구금, 지정거소감시 관련 서류였지만 모두 공란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고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나를 체포할 근거가 없었다는 뜻이에요."¹²²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보다 더 중대한 혐의로 구금된 4 명이 있었는데, 그 중 3 명은 국가안보 혐의인 '전복 선동'으로 구금된 인권 운동가였다. 중국 법률상 이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특정 적법 절차 권리를 무시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적법 절차 위반이 발생했고 그 후 이들 3 명은 각각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¹²³

¹¹⁷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a Chinese lawyer.

¹¹⁸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Wang Yu.

¹¹⁹ Documentation for cases OLV, KMC, CTZ and IMD. This is additionally discussed in subsection below on the exclusion of illegally-obtained evidence.

¹²⁰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Zhao Wei.

¹²¹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Wang Quanzhang.

¹²²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Zhou Shifeng.

¹²³ Documentation for cases PKB, UDL, LQO and NDJ. One individual was detained on charges of "illegal assembly" and convicted of "gathering a crowd to disrupt public order" which, despite being considered a different "category" of crime carries the equivalent maximum prison sentence under the CL.

이는 이러한 유형의 혐의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그 3명은 지정거소감시나 변호인 접견 및 가족과의 연락 제한과 같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동시에 검토 대상 사건 중 최소 3건에서 국가안보 조항에 따라 체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이 지정거소감시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적어도 일부 사건에서는 다른 범죄 행위를 억지로 구성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우회하여 자의적 구금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저는 이른바 '시비 걸기 및 소란 행위' 혐의로 구금되었지만, 그 후 지정거소감시에 처해졌습니다. 터무니없는 일이었어요.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후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만 지정거소감시에 처할 수 있는데, '시비 걸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제 혐의를 더 중대한 범죄 혐의로 변경했습니다."¹²⁴

「형법」 조항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어 인권운동가들이 기본적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다양한 혐의로 구금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들은 차별적 대우를 받고 인권 침해 위험에 연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간주되는지, 특히 어떤 행위가 '국가안보 위협'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성이 없으면,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의적 구금 및 자유권에 대한 그 밖의 침해 위험에 노출된다.

"백지를 꺼내서 흔들면서 그것을 '형사 절차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누군가를 구금할 수는 없습니다."¹²⁵

7.2 변호인 선임권

국제앰네스티(AI)가 분석한 문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와 유능하고 효과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변호인 선임권을 침해했음이 드러났다.¹²⁶

인권운동가들이 변호인 선임권을 완전히 박탈당하거나 구금 상태에 있는 전체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사건 중 단 한 건에서만 '전복 선동'으로 기소된 한 여성 인권운동가가 1심 재판이나 항소심 재판에서 그녀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없었음이 법원 문서를 통해 드러났다.¹²⁷ 그녀는 두 번의 재판 모두에서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았고 모두 패소했다. 그녀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우리는 [구치소] 안에 있는 동안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포함하여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¹²⁸

그러나 해당 문서는 국제앰네스티(AI)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특정 사건들에 대한 다른 조사 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도 침해되었다는 것이다.

법원 문서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AI)는 의뢰인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란 통상적으로 a)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사건에 관여하고, b) 다른 가중 요인(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고문 및 학대의 사용이나 유죄 인정을 유도하기 위한 가족에 대한 압력 등)이 없는 경우, 중국 「형법」 제 67 조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면 감형될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고 정의했다.¹²⁹

¹²⁴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Wang Quanzhang.

¹²⁵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Zhou Shifeng.

¹²⁶ ICCPR, Article 14(3)(b);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rticle 11(1); UN HRCtee Concluding Observations: Spain, UN Doc. CCPR/C/ESP/CO/5 (2008) para. 14; Principle 6 of the Basic Principles on the Role of Lawyers; Principle 13 and Guidelines 5 and 9 of the Principles on Legal Aid.

¹²⁷ Documentation for case ABC.

¹²⁸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a Chinese lawyer.

¹²⁹ Article 67 of the CL: 【自首】Turning oneself in after a crime and giving a true account of one's crime is surrender. Criminals who surrender may have their punishment mitigated or commuted. Among them, those whose crimes are minor may be exempted from punishment. Criminal suspects subjected to compulsory measures, defendants and criminals who are serving their sentence who truthfully confess their other crimes which are not yet known to judicial authorities are regarded as having surrendered. Criminal suspects who do not have the conditions of surrender provided for in the two above paragraphs, but truthfully confess their crimes, may receive a mitigated punishment; and where due to their truthful confession of their crimes the occurrence of particularly serious circumstances is avoided, [their] punishment may be commuted.

국제앰네스티(AI)는 검토 대상 68 건 중 인권운동가들이 무죄를 주장한 46 건을 확인했다. 나머지 10 건은 확보된 자료가 기초장뿐이거나 한 사건의 경우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였다.¹³⁰ 유죄를 인정한 인권운동가 12 명의 경우,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법원 문서 및 공개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소 9 명은 국선 변호사를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¹³¹

"그들은 제가 사선 변호사를 해임하도록 회유와 협박을 포함한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굴복하고 국선 변호사 선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석방된 후 국선 변호사들이 제 가족과의 면담을 완전히 거부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¹³²

7.3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및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배제

중국에서는 고문 및 그 밖에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기타 학대)이 당국이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모든 상황에서 오랫동안 만연해 왔다.¹³³ 국제앰네스티(AI)가 분석한 인권운동가 대상 형사 기소 사례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고문과 고문을 통한 불법 증거 수집에 대한 문제 제기를 조직적으로 무시했다. 국제법상 국가는 고문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며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해자가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¹³⁴

"저에게 권리가 있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그 어떤 권리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휴식과 화장실 사용을 저에게 허용하지 않았고, 저를 구타하면서 자백을 강요했습니다."¹³⁵

"그들은 제 반응에 따라 저에 대한 처우와 음식을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자백하면 제한을 완화하고 식사를 개선했습니다. 제가 저항하면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살아남아 취조실에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백하는 것, 즉 그들이 원하는 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단지 저와 리허핑(Li Heping), 그리고 제가 아는 다른 변호사들이 한 일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한 대로 우리의 행동이 '국가 권력 전복'을 목적으로 했다고 진술하는 것이었습니다."¹³⁶

검토 대상 사건 68 건 중 11 건의 법원 문서를 보면, 변호인들이 의뢰인이 고문당했기 때문에 증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모든 사건에서 변호인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그 11 건 중 3 건에서 법원은 변호인들이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한 사건에서는 "그들이 법원에 불법적인 증거 수집의 인원, 시간, 장소, 방법, 내용과 같은 관련 '단서'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¹³⁷

2015 년 국제앰네스티(AI)와 인터뷰한 변호사들 중 법정에서 의뢰인의 고문 피해를 주장하려 했던 이들은, 고문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확보하라는 법원의 요구를 이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이러한 요구는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¹³⁸

¹³⁰ Documentation for, among others, NEK.

¹³¹ Documentation, and complementary research, related to cases ZUR, AKN, BGY, VCA, WAK, ONU, VWG, LJI and ZVE.

¹³²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Jiang Tianyong.

¹³³ Amnesty International, *No End in Sight: Torture and forced confessions in China* (Index: ASA 17/2730/2015), 11 November 2015,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17/2730/2015/en/>

¹³⁴ HRCtee General Comment 31, paras 15-16; CPT 14th General Report, CPT/Inf 2004 (28) §§31-36.; Article 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Articles 2 and 7 of the ICCPR, Articles 12-14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rticles 5 and 7 of the African Charter, Articles 5 and 25 of the American Convention, Articles 8-9 of the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rticle 23 of the Arab Charter, Articles 3 and 13 of the European Convention, Articles 8-11 of the Declaration against Torture, Guidelines 16-19, 40 and 49-50 of the Robben Island Guidelines, Sections C(a) and M7(g)-(j) of the Principles on Fair Trial in Africa, Article XVIII of the American Declaration, Principle V of the Principles on Persons Deprived of Liberty in the Americas

¹³⁵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Jiang Tianyong.

¹³⁶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Zhao Wei.

¹³⁷ Documentation for cases DBF, CTZ and IMD.

¹³⁸ Amnesty International, *No End in Sight* (previously cited).

그해 말에 진행된 심의에서 유엔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는 증거 배제 절차에서 입증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검찰원과 법원이 부담하도록 보장할 것을 중국 정부에 촉구했다.¹³⁹ 다시 말해, 피고인이 고문 또는 그 밖의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반박하고 학대가 없었음을 입증할 책임은 검찰 측에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 본인이 자신이 당한 학대를 스스로 입증하도록 책임 지워서는 안 된다.

국제앰네스티(AI)가 분석한 문서 중에서 법원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드문 사례들에서도, 그러한 조사가 국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¹⁴⁰ 예를 들어, 한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을 고문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찰 조직이 단순히 '수사 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심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진술서를 제출'했을 뿐인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¹⁴¹

7.4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국제 규범에 따르면 형사 소송 절차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시작되고 완료되어야 한다.¹⁴² 국제앰네스티(AI)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존중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국제앰네스티(AI)는 오랫동안 인권운동가들이 사건이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목격해 왔다. 본 보고서를 위해 검토한 68 건의 사건 중 21 건에서, 최초 '구금' 시점부터 판결 선고까지 구금 기간이 2 년을 초과했다.¹⁴³ 특히 심각한 경우에는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해당 인권운동가가 6 년 동안 구금된 사례도 있었다.¹⁴⁴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68 건 중 22 건에서, 하급 법원은 「형사소송법」 상 규정된 법정 기한을 초과하여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Supreme People's Court, SPC)에 연장 승인을 요청했으며, 최고인민법원(SPC)은 이러한 신청을 모두 승인했다.¹⁴⁵ 재판의 3 분의 1 이상에 국가 최고 법원의 특별 승인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대다수 재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진행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에서 증거로 인용된 행위나 발언들이 국제법 기준에서 범죄 구성 요건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감안할 때, 수사를 계속하도록 승인한 최고인민법원(SPC)의 결정은 사법 행정의 공정성과 실효적인 감독 의지 및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

7.5 공정하고 공개적인 심리를 받을 권리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필수적 장치이며, 사법제도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사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 언론도 재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권리는 아동 관련 사건이나 국가안보 관련 사건과 같이 엄격하게 정의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¹⁴⁶ 그러나 국가는 국가안보 문제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무제한적 재량권을 가진 것이 아니며,¹⁴⁷ 요하네스버그 원칙(Johannesburg Principles)에 따르면 국가안보에 근거한 제한은 무력 사용이나 무력 사용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¹⁴⁸ 이 기준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공개 재판에 대한 제한은 관련 상황에서 엄격히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¹³⁹ CAT Concluding observations: China, 2015 (previously cited), para. 33(a).

¹⁴⁰ Documentation for cases OLV, DXP, HXN and GVL.

¹⁴¹ Documentation for case GVL.

¹⁴² ICCPR (previously cited), Article 9(3); HRCttee, General Comment 35 (previously cited), para 37.

¹⁴³ Documentation for cases ABC, JLM, PKB, OLV, GMX, HRA, RSK, DXP, KMC, VCA, SGH, IDL, TYP, EFN, LUM, YCL, AXE, ONU, VWG, NEK, IMD and PRQ.

¹⁴⁴ Documentation for case QIW.

¹⁴⁵ Under Article 208 of China's Criminal Procedure Law, a court must issue a verdict in a case within three months after accepting it, however the law permits unlimited number of requests for extensions from the SPC at the end of the three months (this is also discussed in the "Domestic criminal law framework" section).

¹⁴⁶ Article 10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Article 14(1) of the ICCPR, Article 18(1) of 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 Article 8(5) of the American Convention, Article 13(2) of the Arab Charter, Article 6(1) of the European Convention, Principle 36(1) of the Body of Principles, Section A(1) and (3) of the Principles on Fair Trial in Africa, Article XXVI of the American Declaration, Articles 64(7), 67(1) and 68(2) of the ICC Statute, Articles 19(4) and 20(2) of the Rwanda Statute, Articles 20(4) and 21(2) of the Yugoslavia Statute; See Article 7(1) of the African Charter

¹⁴⁷ See the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s to a Fair Trial and Legal Assistance in Africa, Section A(3)(f)(ii).

¹⁴⁸ Johannesburg Principles, Principle a(2).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68 건의 사건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일관되게 존중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보여주었다.

국제앰네스티(AI)의 분석에 따르면, 인권에 근거한 사법심사가 결여되어 있고,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든 변호인 항변에 의해서든, 피고인의 혐의 행위가 실상은 인권법의 보호를 받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따라서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또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AI)가 1심 재판과 항소심 재판을 모두 검토한 19 건의 사건에서 변호인들은 개인이 중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다.¹⁴⁹ 그러나 모든 관련 문서에서 법원은 인권에 기반한 변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 인권운동가가 '전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항소 사건에서 변호인은 인권운동가의 온라인 기사 게시 및 유포는 단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 기사 중에는 피고인이 '아름다운 중국(A Beautiful China)'이라는 출판물로 편집한 24 편의 에세이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대학 시절에 대한 성찰, 인권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경험, 중국 근대사에 대한 분석, 더 책임 있는 정부에 대한 열망 등이 포함되었다.¹⁵⁰ 그 변호인은 이어서 정치적 변화를 옹호했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혐의의 근거가 된 에세이들이 마하트마 간디(Mahatma Gandhi)의 '비폭력 불복종' 철학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목표는 폭정을 끝내는 것이지, 어떤 이민족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8,000 만 공산주의자를 몰아낼 수 없다. 그들 중 일부는 민주적 정치인으로 변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중국인이며, 미래에 함께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할 것이다."¹⁵¹

그러나 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면서 인권운동가의 '행동이 시민권 행사의 범위를 초과했다'고 판시하면서도 그러한 판결에 적용한 기준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한 인권운동가에 대해 '전복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리며 판사들은 중국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또는 집단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판시했다.¹⁵² 법원은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어떤 기준도 적용하지 않은 채 변호인의 변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국 법률상 기본 원칙에 따르면,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형사소송법」은 사건이 국가기밀이나 사적인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비공개를 허용하고 있다.¹⁵³ 68 건의 사건 중 11 건에서 법원은 1심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이유가 제시된 9 건의 사건에서 법원은 국가기밀이 관련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그중 국가기밀 범죄로 기소된 사건은 단 2 건에 불과했으며, 두 사건 모두 변호인 측이 자료가 기밀로 분류된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¹⁵⁴ 그 두 사건의 법원 판결문에는 심리의 어떤 측면이 국가기밀과 관련되었는지 명시되지 않았으며, 판결문 자체도 편집되지 않아 국가기밀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68 건의 사건 중 41 건에서 법원은 심리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¹⁵⁵

¹⁴⁹ People's Republic of China, Constitution, Article 35, "Citize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shall enjoy freedom of speech, the press, assembly, association, procession and demonstration".

¹⁵⁰ Xu Zhiyong, *A Beautiful China - One - China's Twentieth Century*. Translated by Joshua Rosenzweig, 12 February 2024. <https://chinachange.org/2024/02/13/a-beautiful-china-chinas-twentieth-century/>. The 23 remaining essays are also available, translated into English, at this site.

¹⁵¹ Xu Zhiyong, "A Beautiful China, Part Thirteen: The Citizens Movement," translated by Andrea Worden, 24 August 2024, <https://chinachange.org/2024/08/28/the-citizens-movement/>.

¹⁵² Documentation for case HXN, referencing Article 51 of the Chinese constitution.

¹⁵³ Article 188 of the CPL.

¹⁵⁴ Documentation for cases NYT and LZN.

¹⁵⁵ In the other 16 cases, Amnesty International either did not have access to the relevant court verdicts or the case had not yet gone to trial.

그러나 국제앰네스티(AI)는 인터뷰와 관련 언론 자료의 검토를 통해 그중 최소 15 건에서 가족, 외교관, 언론인 또는 친구와 지지자들이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도록 차단되었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국제 기준과 중국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인권운동가들 스스로도 이러한 절차적 권리 침해에 반발했지만, 긍정적인 결과는 얻지 못했다. 예를 들어,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한 사건에서 한 인권운동가는 원심 재판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며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궁극적으로 기각되었다. 1심 재판 판결문은 재판이 공개적이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¹⁵⁶ 이는 공개 재판이라는 주장이 거짓일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7.6 공정한 처벌

처벌이나 처벌 부과 방식이 국제 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 여기에는 국내법상 합법적인 제재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¹⁵⁷이나 국제 기준을 위반하여 선고된 처벌이 포함된다.

68 건의 사건 중 19 건에서 피고인은 「형법」 제 65 조와 제 66 조에 따라 재범자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 관행일 수 있지만, 첫 번째 유죄 판결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양형 관행은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고 추가적인 자의적 구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68 건의 사건 중 8 건은 연구 기간(2014~2024 년) 동안 두 차례 기소된 4 명의 인권운동가와 관련이 있다. 그 4 명 중 2 명은 재범자라는 이유로 두 번째 유죄 판결 후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¹⁵⁸ 다른 인권운동가는 첫 사건이 발생한 지 4 년 후 동일한 '전북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원래의 형보다 1 년 짧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68 건의 사건 중 38 건에서 피고인은 '정치권리박탈'형도 선고받았다. 이는 국제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그 38 건의 사건에서 이러한 '추가적' 처벌은 짧게는 단 수일부터 길게는 종신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일부 사례의 경우 피고인은 징역형과 같거나 더 긴 정치권리박탈형을 선고받았다.¹⁵⁹ 1997 년 「형법」 개정으로 '정치권리박탈' 조항이 중국 법률에 도입된 이래, 유엔자의적구금실무단(WGAD)은 이러한 처벌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표현, 결사, 언론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해 왔다.¹⁶⁰

국제앰네스티(AI)는 추가 처벌/형량을 허용하고 특정 경우에 이를 요구하는 형법 조항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위배된다고 판단한다. 첫째, 본 연구 브리핑에서 분석된 사례의 대다수가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행위에 대한 기소와 관련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기소된 인권운동가는 어떠한 제재도 받아서는 안 되며,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한 장기적 제한은 더욱 용납할 수 없다. 둘째, 어떤 경우에도 집회와 표현에 대한 장기적 전면 금지는 개인의 정치적 표현과 자신이 직면한 불의를 지적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도 않고 적합한 형벌도 아니다.

¹⁵⁶ Documentation for case PKB.

¹⁵⁷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rticle 1;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Report: 10 January 1997, UN Doc. E/CN.4/1997/7, para 8.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Report: 30 August 2005, UN Doc. A/60/316, paras 26-28.

¹⁵⁸ Documentation for cases OLV, IMD and HXN. The fourth, case, NEK, remains in pre-trial detention as of the time of writing.

¹⁵⁹ Documentation for cases ZUR, AKN, BGY, VCA, EFN, LUM, QAV and SHX.

¹⁶⁰ WGAD, *Visit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eviously cited)*, para. 50.

7.7 불법 구금에 대한 배상권

국제 기준에 따르면, 불법 체포나 구금의 피해자는 누구나 보상을 비롯한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¹⁶¹ 그러나 중국 국내법이 부여하는 권리, 특히 국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먼저 판결에 대해 항소하여 승소해야 한다. 본 분석의 대상이 된 68 건의 사건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항소 사건 중 법원이 받아들인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제앰네스티(AI)는 인권 문제와 관련되고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에 관한 형법 조항이 적용된 사건 중 판결이 뒤집히고 피고인에게 배상이 제공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부당 체포 사건 중 단 한 건에서만 피고인이 기소 기록을 말소하고 배상 판결까지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방 정부는 이를 이행하기를 거부했고 금전적 배상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당 피고인은 나중에 다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객관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안보나 '일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그녀는 현재도 수감 중이다.

"통상적인 형사 사건이라면, 항소 시 [법원은] 항소 기각 여부, 각하 여부, 아니면 원심 유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서조차 제게 발급해주기를 거부했습니다."¹⁶²

¹⁶¹ Article 9(5) of the ICCPR, Article 24(4) of the Convention on Enforced Disappearance, Article 16(9) of the Migrant Workers Convention, Article 14(7) of the Arab Charter, Article 5(5) of the European Convention, Section M(1)(h) of the Principles on Fair Trial in Africa; See Article 8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Article 7 of the African Charter, Article 25 of the American Convention, Principle 35 of the Body of Principles, Article 85(1) of the ICC Statute.

¹⁶²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Wang Quanzhang.

8. 결론 및 권고사항

"중국은 무지, 야만, 권위주의를 법에 명문화했다."¹⁶³

국제앰네스티(AI)가 68 건의 사건에 대한 102 개의 사법 문서를 분석한 결과, 중국 사법부는 정부가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 역할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민감한' 사건을 다룰 때, 인권 옹호와 관련된 활동을 억압하고 개인들이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단념시키려는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검토 대상 사건 전반에 걸쳐,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들은 모호하게 규정된 범죄 혐의로 인해 조직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범죄 혐의 조항들은 중국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에서 준수하기로 약속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제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거듭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 법정 절차는 국제적 공정 재판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재판 전에 장기간 구금되고,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와의 접견이 거부되며, 비공개 또는 방청이 극도로 제한된 재판을 받는 사례가 흔하다. 고문이나 그 밖의 학대에 대한 혐의는 무시되며, 절차적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처벌은 징역형을 넘어 확대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석방 후에도 오랫동안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한 추가적 제한이 계속 뒤따른다.

이러한 관행은 공무원 개개인의 고립적 위법 행위나 예외적 위법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이는 사법부가 인권 옹호를 저지하고 처벌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의도적 체계를 반영하며, 법치주의보다 중국공산당(CCP)의 통제권을 우위에 두도록 설계된 구조 내에서 작동한다.

여기서 개략적으로 언급된 위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와 입법부가 인권운동가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되는 모호한 범죄 조항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하여, 가능한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한 진전은 기본적 자유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한 중국 당국의 약속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는 사법기관이 정치법률위원회나 그 밖 어떤 주체의 정치적 간섭 없이 운영되고 독립적인 감독의 대상이 되도록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¹⁶³ Amnesty International interview with a Chinese lawyer.

본 연구 과정에서 인터뷰한 인권 변호사들이 명확히 지적했듯이, 이러한 범위와 규모의 변화에 대한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특히 본 분석의 기초가 되는 유엔특별절차임무수행단(UNSP)의 10 여년에 걸친 노력 등으로 결점을 인정하고 개선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중국 정부의 반응은 기껏해야 형식적인 것에 그쳤고 최악의 경우 상당히 적대적이었다. 본 분석에 포함된 64 명의 인권운동가 사례 중 국제앰네스티(AI)는 53 명에 대해 유엔특별절차임무수행단(UNSP)이 제기한 우려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변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응답률 자체는 비교적 높았으나, 정작 답변의 내용은 실질적인 실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국 정부는 해당 사건들이 단지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사법 집행 과정일 뿐이라고 항변하며, 인권 침해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그에 따르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AI)가 검토한 공식 답변에서 중국 정부는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모든 사건이 '법률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의 답변 중 절반에 불과한 경우에서만, 고문 및 기타 형태의 학대에 대한 중대한 혐의를 포함하여 유엔 전문가들이 제기한 혐의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이 이 사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는 1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결여되어 왔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유엔의 인권 전문 기구들이 개별 사건을 광범위하게 기록한 내용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보여준다. 첫째, 이러한 기록은 중국 내 인권 상황을 분석하는 토대가 되었다. 즉, 법적 확실성의 일관된 부재, 단순한 반대나 비판 및 조직화 활동을 체계적이고 표적화된 방식으로 범죄화하는 방식,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적 공백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냈다. 둘째, 중국 인권운동가들과 인권 옹호 활동에 나선 가족들, 그리고 인권 침해 생존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얼마나 확고하고 헌신적인지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계속해서 유엔 체계를 활용하여 목소리를 내고, 기록을 남기며, 중국 정부의 가장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검증하고, 궁극적으로는 책임 규명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는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헌신하는 활동가, 인권운동가, 민중 네트워크, 개인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를 존중, 보호하고 실현하며, 중국 내에서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려는 행위를 중단할 것
- 단순히 표현, 결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 권리 또는 그 밖의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되거나 투옥된 모든 이들에 대한 형사 기소를 취하하고 즉시 석방하며, 향후 그러한 기소 관행을 중단할 것
- 석방될 때까지 구금된 모든 인권운동가들이 가족 및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을 정기적으로 접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고문 및 기타 학대를 받지 않도록 할 것
- 「형법」 제 105 조제 1 항 및 제 293 조에 따른 모든 기소를 중단하고, 해당 법률이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개정될 때까지 기소를 재개하지 말 것. 또한 「형법」 제 103 조제 2 항 및 제 105 조제 2 항을 폐지할 것
- 「형법」 제 7 조를 폐지하고, 현재 집행 중인 모든 정치권리박탈형을 종료할 것
- 「형법」, 「형사소송법」, 「국가보안법」 및 관련 사법 해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형사 및 국가안보 관련 법률을 국제인권법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
-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와 고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수사 요구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형사 절차가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모든 사건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에 의해 완전하고 효과적인 심사를 받도록 할 것

**국제앰네스티(AI)는 인권을 위한 세계적인
운동입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불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연락처



info@amnesty.org



+44 (0)20 7413 5500

대화 참여



www.facebook.com/AmnestyGlobal



[@Amnesty](https://twitter.com/Amnesty)

어떻게 이 판결이 ‘적법한’ 것일까요?

인권운동가 탄압 시 중국 법원의 역할

색인: ASA 17/0307/2025

2025 년 10 월

언어: 영어

amnesty.org

국제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